●환경부공고 제2022-147호

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3월 14일

환경부장관

「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 재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」개정(환경부, '21.12) 및 「유독물질 지정 고시」 개정(국립환경과학원, '21.12)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(1군·2군·면제)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

2. 재행정예고 사유

환경부공고 제2022-97호로 행정예고된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하여 재행정예고

3. 주요 개정내용

가. 신규 제한ㆍ유독물질(6종)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

나. 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(CAS번호) 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

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(www. me.go.kr, 법령/정책→법령정보→입법·행정예고)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| 개정(안) | 수정(안) | 수정사유 |
|-------|-------|------|
| | | |
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

- 전자우편 : leekh23@korea.kr

- 팩스 : (044) 201 - 6830

- 전자공청회: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

5. 그 밖의 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/정책→법령정보→입법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